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30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의2, 제10조,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- 나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